

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 안	19-125
번 호	관련

발의년월일 : 2019. 9. .

발 의 자 : 신중갑 외 1명

1. 수정이유

문구의 모호성과 용어의 삭제로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6조의2, 제13조 및 제16조의 조문 중 ‘남북관계’ 용어를 삭제함.

나. 제6조의2 제2항 중 “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”를 “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”로 수정함.

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국가 간 분쟁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 및 지원) ① 구청장은 국가 간 분쟁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.

제13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국가 간 분쟁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중소기업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비용, 상호·상표 변경 등에 소요되는 비용

제16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국가 간 분쟁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마케팅 지원 및 판로개척)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6조(마케팅 지원 및 판로개척) (현행과 같음) <u>제6조의2(국가 간 분쟁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 및 지원) ① 구청장은 국가 간 분쟁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</u> <u>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.</u>
제13조(예산지원) 구청장은 기업 지원 및 육성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 1. ~ 8. (생 략) <u><신 설></u> 9. (생 략)	제13조(예산지원) (현행과 같음) 1. ~ 8. (현행과 같음) 9. <u>국가 간 분쟁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중소기업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비용, 상호·상표 변경 등에 소요되는 비용</u> 10. (현행 제9호와 같음)
제16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	제16조(위원회의 기능) (현행과 같음)

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. 1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	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국가 간 분쟁 등으로 경제활동 이 위축된 중소기업의 피해구 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</u>
5. (생략)	6. (현행 제5호와 같음)